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85
----------	------------

제안년월일 : 2016년 4월 25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새활용플라자의 관리·운영 위탁시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운영협의회를 상설 운영하도록 함.

2. 주요 골자

-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안 제13조)
- 운영협의회를 상설 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6조)
- 운영협의회 개최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생략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안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5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안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

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한다.
-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p>②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새활용플라자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4.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자의 선정·관리 및 입주자와의 협업·협력에 관한 사항 5. 서울새활용플라자, 재활용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기타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14조(관리·운영 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p>제14조(관리·운영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제15조(설치) ① 시장은 서울재활용플라
자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재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
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② (생략)

제16조(구성) ① ~ ④ (생략)

⑤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구성·운영
기간으로 한다.

⑥ (생략)

제18조(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소집한
다.

〈신설〉

② (생략)

③ (생략)

제15조(설치) ① 시장은 서울재활용플라
자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재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조례안과 같음)

제16조(구성) ① ~ ④ (조례안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조례안과 같음)

제18조(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
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조례안과 같음)

④ (조례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새활용플라자”란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시민의 재활용에 관한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업사이클링”이란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관리·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2.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
3.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문화 확산
4.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에 대한 교육, 전시, 체험 공간 제공

5. 기타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설치) 서울재활용플라자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국내·외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개인, 기업, 단체, 기관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
2.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제품·작품을 생산·연구하는 공간
3.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제품·작품의 생산·연구 등에 필요한 소재를 조달·가공·판매하는 시설(이하 “소재은행”이라 한다)
4.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제품·작품을 전시·판매하는 공간
5. 교육·체험공간, 회의실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5조(적용범위) 서울재활용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유재산 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① 서울재활용플라자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적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개인, 기업, 단체, 기관
2. 기타 재활용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재활용 관련 행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사용기간) ①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시설의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 받으려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9조 (관리비) ①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자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부과·징수한다.

② 관리비는 관리자가 정하되 관리비의 내역은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한다.

제10조(입주자 등 지원) ① 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에 입주한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개인, 기업,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공모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새활용플라자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입주자 등의 의무) ① 입주자는 서울새활용플라자 내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즉시 복구비용을 시장에게 변상하

거나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2. 입주자가 제11조에 따른 입주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정상적 운영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3. 기타 서울새활용플라자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3장 관리·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관리·운영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운영협의회

제15조(설치) ① 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서울새활용플라자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2.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서울새활용플라자 프로그램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서울새활용플라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자
3. 재활용, 디자인, 경영, 건축, 도시계획, 문화관광, 일자리 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 재활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7조(제척·회피 등) ① 협의회는 위원이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전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